

「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및 이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(안 제6조의2)
 -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운행 규정
-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(안 제7조)
 - 보행상 장애인 및 65세 이상 대상자 외의 이용대상자 규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,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특별교통수단 외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운행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,

○ 검토 결과,

- ‘22년 1년간 이용 건수는 휠체어 사용자 6,526건, 비휠체어 사용자 16,732건(장애인 외 고령자 등 포함)으로 비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2배 이상으로 많은 상황임.
-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토록 규정 신설 등을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